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대비표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u>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u>”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p> <p>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yesfta.customs.go.kr)을 말한다.</p> <p>7. ~ 10. (생략)</p> <p>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과의 <u>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u>”이란 ----- ----- -----.</p> <p>6. ----- -----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p> <p>7. ~ 10. (현행과 같음)</p> <p>제5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비 • 관세청 FTA포털 URL 주소 변경 반영 • 용어 정비
---	---	--

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원산지증명서는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이 동일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수입자는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 ③ (생략)

④ 원산지증명서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

템-----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선하증권(B/L)-----

-----.

⑥ -----

----- 것 또는 "원본
----- 관련 법령-----
-----.

제7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선하증권(B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권 등 관련 무역서류로서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 ④ (생략)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부서에 원산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 의뢰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한다.

1. 2. (생략)

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생략)

⑥ (생략)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

/L) -----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
----- 않는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관세행정규칙의 법령위임 준수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사전
확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
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
게 별지 제9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서
면,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는 외국의 수출
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세번
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 원료구입명
세서, 원재료명세서(BOM), 공정내역
설명서 등)

2. 3.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로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
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사전확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

----- 관세청장 -----

1. -----
----- 예: -----

2. 3.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

반영하여 원산지 사전
확인 기관장 변경(본부
(직할)세관장→관세청장)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자구 정비

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 설>

제12조(직접운송 원칙) (생 략)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2. (생 략)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물품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영 제236조의2제4항에 따라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사전확인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접운송 원칙) (현행과 같음)

1. -----

--- 선하증권(B/L) ----- . -----

2. (현행과 같음)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

1. (생략)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호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

3. ~ 6. (생략)

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신고서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수출신고서 각 품목번호별로 발급

-----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

1. (현행과 같음)

2. -----
----- 별표 1에서 정한 국가-----

3. ~ 6. (현행과 같음)

② -----
-----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
-----.

③ -----
-----.

1. -----
----- 경우: 선하증권(B/L) -----

2. -----
----- 경우: -----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한국산 수출 물품에 대한 GSP 혜택 중단('21.10.12.부터) 반영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④ (생략)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①
(생략)

②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
적인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
고자 하는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에 서
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2호서식
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관세청 인터넷통
관포탈에 등록해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
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
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 관
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
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

-----.

• 띄어쓰기 오류 정비

• 띄어쓰기 오류 정비

FTA관세법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 5. (생략)

② (생략)

제2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19조제1항제5호의“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 제1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영수증·선하증권(B/L)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1. ----- 물품: -----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띄어쓰기 오류 정비

1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 : 제1
1조제1항제2호의 서류

3. 4. (생략)

제21조(원산지확인서) ① (생략)

②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② (생략)

②·③ (생략)

2. ----- 물품: -----

3. 4. (현행과 같음)

제21조(원산지확인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제2항 중복 오류 정정

으로“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한다.

④ (생략)

제27조(취하 및 반려) 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생략)

2.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 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 9. (생략)

③·④ (생략)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으로“CERTIFIED -----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취하 및 반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않은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제관세협력국장-----
-----.

1. ~ 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른 직위명 정비

④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
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
지 아니한 세관장의 통지는 등기우편이
나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로 한다.

제3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를 2021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같음)

④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제33조(통지방법) -----
- 않은 -----

-----.

제34조(준용규정) -----
- 않은 -----

-----.

제35조(재검토기한) -----

----- 2021년 7월 1일 --

6월 30일-----

• 관세청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명 정비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반영

한다.

---.

[별표 1]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

협정·규정	적용	지 역	대 상 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수출·입	아시아(1)	북한
일반특혜관세(GSP) ¹⁾	수출	유럽(2)	러시아, 벨라루스
		아시아(1)	카자흐스탄
		오세아니아(1)	호주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수출·입	아시아(12)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	페루,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 수단*, 적도기니*, 베냉*,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수출·입	아시아(4)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아메리카(6)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중동(2)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	튀니지
		유럽(1)	세르비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수출·입	아시아(6)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²⁾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수입	아시아-오세아니아(1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³⁾ ,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⁴⁾ ,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34)	앙골라 ⁵⁾ ,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⁶⁾ ,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1)	아이티

주 : * 표시는 최빈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 1)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2021년 10월 12일부터 해당 국가에서 관세특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몽골 :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부탄 :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솔로몬제도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5) 앙골라 :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6) 상투메프린시페 :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사전확인 이의제기서 <신 설>

원산지 사전확인 이의제기서				
이의 제기인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사전 확인	사전확인서 수령일자	년 월 일		
	사전확인 내용			
	품명		HS번호 (6단위)	
	규격		용도	
이의 제기	이의제기 요지			
	이의제기 내용			
<p>「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관 세 청 장 (인)</p>				
<p>※ 유의사항</p> <p>원산지 사전확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전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p>				